##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0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 : 부승찬 · 안규백 · 문대림

이인영 • 추미애 • 윤후덕

김원이 · 김 윤 · 한정애

차지호 · 김현정 · 정태호

신정훈 · 정성호 · 김민석

민병덕 • 허 영 • 김성환

박범계・황 희 의원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점이 확인되었으며,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이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반헌법적・불법적 권력 남용이 있었더라도 그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계엄의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여 계엄 결정 대한 엄격성을 부여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를 요구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계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계엄 해제 이후 대통 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 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제13조 등).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계엄 선포의 통고)"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동의 및 통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계엄군 등의 방해로 국회가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계엄은 해제된 것 으로 본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감독 사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 결과
- 나.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사항
- 다.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 라.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 마. 제10조의 비상계엄하 군사법원의 재판 사항
- 바. 그밖에 계엄 선포 이후 각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사무 내용 및 지휘·감독 이행 사항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현행범인"을 "현행범인(계엄 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인 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엄사령관 및 행정기관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한 경우에 도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생          | 제4조(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동   |
| 략)                           | 의 및 통고) ① (현행과 같음)   |
| <u> &lt;신 설&gt;</u>          | <br>②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때 |
|                              | 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    |
|                              |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
|                              | 한다. 다만, 전시인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
| 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                      |
|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            |                      |
| 하여야 한다. <u>&lt;단서 신설&gt;</u> | <u>다만, 대통령이</u>      |
|                              |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아니      |
|                              | 하거나, 계엄군 등의 방해로 국    |
|                              | 회가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된      |
|                              | 때에는 그 계엄은 해제된 것으     |
|                              | <u>로 본다.</u>         |
| <u>&lt;신 설&gt;</u>           | 제11조의2(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
|                              |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
|                              |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     |
|                              | 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     |
|                              | <u>는 아니 된다.</u>      |
| <u>&lt;신 설&gt;</u>           |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
|                              | 보고)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    |

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 · 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

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

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 감독 사항 및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 결 과

나.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 의 지휘·감독 사항

다.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 의 특별조치 사항

라.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마. 제10조의 비상계엄하 군 사법원의 재판 사항

바. 그밖에 계엄 선포 이후 각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의 사무 내용 및 지휘・감 독 이행 사항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 현행범인(계엄 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인은 제외한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 ① ----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u>&lt;신 설&gt;</u> |    | ② 계엄사령관 및 행정기관은     |
|--------------------|----|---------------------|
|                    |    |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한     |
|                    |    | 경우에도 제11조제1항 등에 따   |
|                    |    | 라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    |
|                    |    | 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경    |
|                    |    | 우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    |
|                    |    | 이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
|                    |    |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 제14조(벌칙) ①・② (생    | 략) | 제1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
|                    |    | <u> </u>            |

<u><신 설></u>

<u>③</u>·<u>④</u> (생 략)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에 처한다.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